

입학관리본부 운영규정

□ 제 정 : 2020. 3. 13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본부는 수원과학대학교 입학관리본부(이하 “본부”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입학관리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위치) 본 본부는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 내에 둔다.

제4조(설치목적) 본 본부는 본 대학에서의 홍보와 입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본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업무) 본 본부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
2.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연구 및 개선
3. 입학전형 세부 시행계획 및 지침 수립
4. 대학입학전형 운영 및 관리
5. 입시 예산 편성 및 관리
6. 입시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
7. 입시관련 제위원회 운영
8. 입학전형 상담 운영
9. 입시 홈페이지 관리
10. 입학전형 관련 서류의 보존 및 관리
11. 입시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 관리
12. 입학전형 결과 분석 및 평가
13. 홍보 브로셔 제작
14. 진로체험 운영
15. 학교 홈페이지 홍보 관련 관리
16. 학교 대표 SNS 관리
17. 기타 본부 내 서무에 관한 사항

제 2 장 조 직

제6조(조직) ① 본 본부에는 본부를 대표하는 본부장을 두며, 필요에 따라 부분부장 등을 둘 수 있다.

② 본 본부에는 업무 처리를 위해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③ 본 본부의 운영을 위해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④ 홍보와 입학관리를 위해 대학의 관련 부서와 협력한다.

제7조(본부장) ① 본부장(및 부분부장)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본부장은 본부를 대표하고 총괄한다.

③ 본부장(및 부분부장)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재 정

제8조(재정) 본 본부의 재정은 본 대학 회계로 총당한다.

제9조(예산 및 결산) 본 본부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 대학의 회계기준에 따르며,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(해산) 본 본부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.

제 4 장 기 타

제11조(규정개정) 이 규정의 개정은 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